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 및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2. 8. 29. ~ 9. 30.까지 23일간 1개반 4명이 참여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17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지적하여 이에 대한 시정 등 행정상 조치와 환수 5,000천 원 등 재정상 조치를 요구하였다.

□ 감사결과

처분현황			처 분 요 구							
			처분종류(건)					재정상조치(건/천원)		신분상 조치(명)
계	본처분	현지 처분	계	시정	주의	권고	통보	계	회수	훈계
17	17	-	17	3	11	1	2	5,000	5,000	7

인천광역시 주 의(훈계) 요 구

제 목 ‘2021년 주민참여예산(2020년 발굴) 시정참여형’ 선정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관 계 부 서 ○○관

내 용

인천광역시 ○○관은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표1]과 같이 목표 금액을 40,000백만 원으로 설정하고 사업 선정을 추진하였다.

[표 1]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목표 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참여형				협치형			비고
	소계	일반참여형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소계	시정협치형	동협치형	
40,000	27,000	12,000	10,000	5,000	13,000	9,000	4,0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시정참여형’은 민관협치기구 및 온라인 매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신청하는 형태이며, [표2]와 같이 ‘공론화 미이행 사업’과 ‘공론화 완료 사업’으로 구분된다.

[표 2] 시정참여형 운영형태

구분	참여경로	제안자	제안사업 심의
공론화 미이행 (민관속의 미이행)	온라인매체, 현장방문 등	일반시민, 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해당 분과위원회)
공론화 완료 (민관속의 이행)	민관협치기구	민관협치기구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관)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공론화 미이행 사업’은 [표3]과 같이 각종 온라인 매체, 현장방문 등 주민참여 과정을 거쳐 제안된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추진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구체화하며, 이를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온라인 주민투표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

[표 3] 공론화 미이행 사업

주민요구사업 (공론화 미이행) (사업부서)	부서 검토 (적정성, 타당성 등) (사업부서)	예산실무협의 (사업부서, 예산부서)	분과위원회 심사 (실국, 분과위원회)
주민투표 (8월) (예산부서)	총회 (9월) (위원회)	예산안 편성 (9~10월) (사업·예산부서)	예산안 심의 확정 (11~12월) (시의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공론화 완료 사업’은 [표4]와 같이 민간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협치기구를 통해 민관숙의 과정을 이행한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검토 및 분과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선정하고 총회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4] 공론화 완료 사업

주민요구사업 (공론화 완료) (사업부서)	부서 검토 (적정성, 타당성 등) (사업부서)	예산실무협의 (사업부서, 예산부서)	분과위원회 의견수렴 (실국, 분과위원회)
사업선정 (8월)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총회 보고 (9월) (위원회)	예산안 편성 (9~10월) (사업·예산부서)	예산안 심의 확정 (11~12월) (시의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사업선정 절차 이행 미흡

▶ 공론화 미이행 사업

‘공론화 미이행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 대회’ 등 7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소관부서에서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2,120백만원)’은 사업부서에서 사업 신청서는 제출하였으나, 사업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분과위원회의 사업 심사 결과를 ○○관에게 제출하지도 않았으나, ○○관은 분과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근거 없이 공론화 미이행 사업에 본 사업을 포함하였고 총회에 상정하였다.

▶ 공론화 완료 사업

‘공론화 완료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 조성’ 등 3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사업부서에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 결과를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관은 ‘202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주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 조성(251백만원)’ 사업은 분과위원회 의견수렴 및 주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총회에 상정되었다.

2. 선정 절차 미이행 사업 선정

시정참여형 사업은 주민요구사업을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고 분과위원회 심사 또는 민관협치기구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관은 공론화 미이행 및 공론화 완료 7개 사업(6,021백만원)을 총회에 상정하였으나, 2020년 9월 24일 개최한 총회에서는 시정참여형 목표금액인 100억원이 달성되지 않음에 따라 ‘공론화 진행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시정참여형의 규모 및 사업은 10월에 최종 확정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시정참여형’ 선정을 위한 총회는 추가로 개최하지 않았으며 ○○관은 총회에 상정된 7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6개 사업, 11,922백만원을 총회를 거치지 않고 시정참여형 사업으로 직접 선정하였다.

따라서, ○○관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16개 사업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명시한 ‘시정참여형’ 목표 금액인 1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써,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을 심사·확정’ 한다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과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다.

3. ‘일반참여형’ 선정 사업을 ‘시정참여형’으로 중복 선정

‘2021년 주민참여예산 시정참여형’으로 선정된 사업 중, ‘○○사업(150백만원)’은 일반참여형’ 추진과정을 통해 ‘2021년 주민참여예산 일반참여형’으로 선정된 사업이나, ○○관은 해당 사업을 사업명만 변경하여 ‘시정참여형’으로 중복 선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관은

[주의] ①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운영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 선정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대로 주민이 제안하고 심사한 사업에 대해서만 참여예산에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벗어나서 무리하게 사업을 선정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부적정하게 선정한 관련자를 훈계처분 합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훈계) 요 구

제 목 '2022년 주민참여예산(2021년 발굴) 민관숙의완료형' 선정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관 계 부 서 ○○관

내 용

인천광역시 ○○관(이하 “○○관”이라 한다.)은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표1]과 같이 주민참여예산 목표 금액을 50,000백만 원으로 설정하고 사업 선정 을 추진하였다.

[표 1]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목표 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참여형	협치형			주민자치회형	비고
		소계	민관숙의완료형	특정의제발굴형		
50,000	20,000	25,000	15,000	10,000	5,0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민관숙의완료형' 선정 과정

민관숙의완료형 사업은 [표2]와 같이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써 현장방문, 시민의견 수렴, 제안·공모 등 다양한 시민 참여 경로를 통해 채택·선정되고 사업부서 검토 등을 거쳐 추진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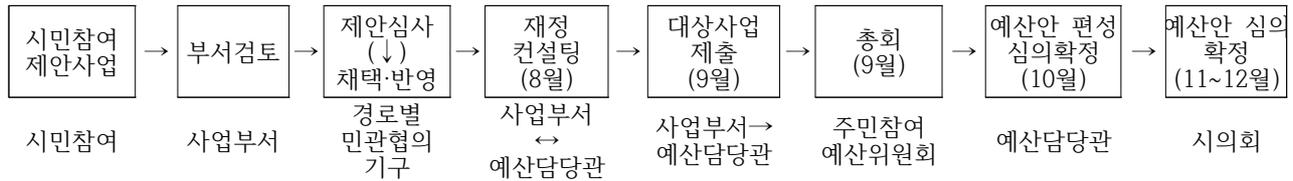
[표 2] 민관숙의완료형 시민참여경로 현황

구 분	시민참여 경로	비고
현장방문 등	시장군구연두방문, 시민소통의 날, 찾아가는 시청, 시민시장 대토론회	
정책공모	내마을소확행아이디어 찾기, 시민제안제도, 인천형 청년정책 발굴 TF	
사업공모	더불어마을(희망지사업),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등	
생활SOC사업	주민제안형 생활SOC 사업, 주민제안형 도시재생뉴딜 등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업선정 절차는 [표3]과 같이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고, 민관협의기구에서 심사 및 채택하며, 재정컨설팅 과정을 통해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제출하고 총회보고를 거쳐 시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표 3] 민관숙의완료형 사업 선정절차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선정 절차 미이행 사업 선정

민관숙의완료형 사업은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부서에서 검토하여 민관협의기구에서 심사하고 총회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관은 ‘민관숙의 완료형’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각 부서에 사업 선정을 요청하였으나 총회 개최 전까지 ‘민관숙의 완료형’ 사업을 신청한 부서가 없었고, 2021년 10월 1일 개최한 총회에서는 ‘민관숙의완료형(150억 원) 사업은 공론화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완료시점인 10월에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민관숙의완료형’ 선정을 위한 총회는 추가로 개최하지 않았으며 ○○관은 총회를 거치지 않은 22개 사업, 16,166백만원을 민간숙의완료형으로 직접 선정하였다.

○○관의 이러한 조치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명시한 ‘민관숙의 완료형’ 목표 금액인 15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운

영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을 심사·확정’ 한다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과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다.

2. 민관협의기구 미심사 사업 선정

○○관이 선정한 민관숙의완료형 사업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사업부서 검토를 거쳐 민관협의기구의 심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민관숙의완료형 선정 대상사업으로는 적절하다.

그러나, ‘◆◆사업’ 등 10개 사업은 사업부서의 검토를 이행했으나 민관협의기구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 민관숙의완료형 선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에도 ‘민관숙의완료형’ 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절차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관은

[주의] ①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운영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 선정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대로 주민이 제안하고 심사한 사업에 대해서만 참여예산에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벗어나서 무리하게 사업을 선정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부적정하게 선정한 관련자를 훈계처분 합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훈계) 요 구

제 목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관 계 부 서 ○○관

내 용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추천방식에 의해 선정된 사람은 총 위원의 3/4이상으로 하고, 각 군·구 위원회 및 군수·구청장 추천 및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는 각 2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예산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개요

구성	자격	임기	주요기능
- 200명 이내 * 추천방식 : 총 위원의 3/4이상 * 시장 및 군·구 추천 : 각 20명 이내	예산교육과정 이수자	1년(2회 연임)	-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 심사 - 분과위원회의 의견 심의·조정·결정 -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의견 제출 - 의견수렴(현장방문·공청회·토론회 개최) - 예산편성·결산 의견 제출 등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재구성

인천광역시 ○○관(이하 ‘○○관’이라 한다.)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표2]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2]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2019년~2022년)

(단위 : 명)

연도	구분	계	공개모집	시장추천	군구추천	비고
2019년 (4기)	계	200	160	20	20	
	연임	17	16	0	1	
	신규	183	144	20	19	
2020년 (5기)	계	200	163	20	17	
	연임	95	75	14	6	
	신규	105	88	6	11	
2021년 (6기)	계	200	170	17	13	
	연임	138	118	11	9	
	신규	62	52	6	4	
2022년 (7기)	계	191	177	4	10	
	연임	50	41	4	5	
	신규	141	136	0	5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공개모집을 통한 신규 위원 선정은 공개모집 공고 및 추천방식을 통해 총 위원의 3/4 이상인 150명 이상의 위원을 매년 적정하게 선정하였고 내부결재를 통해 공개모집 선정 결과를 확정하였다.

군·구 위원회 및 군수·구청장 추천 위원은 군구 소관부서에서 공문을 통해 ○○관에게 신청하였고 ○○관은 연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군구 추천 위원을 선정하였다.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는 인천시 관련부서에 시정 전문가 추천 공문을 통해 시장 추천 위원 선정을 추진하였다.

1. 시장 추천 위원 선정 과정 미흡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는 2019년에는 20명 전원이 신규 위촉되었으며, 2020년에는 20명 중 연임 14명 신규 6명이고, 2021년에는 총 17명 중 연임 11명 신규 6명이며, 2022년에는 신규 위촉은 없으며 연임만 4명으로 구성되었다.

○○관은 인천시 관련부서에 시정 전문가 추천 공문을 송부하여 시장 추천 신규 위원 위촉을 추진하였으나, 2019년 및 2020년에는 추천자가 없었고, 2021년에는 인천광역시 ■■■과에서 2명을 추천하였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투명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 선정 위원 총32명 중 2021년에 ■■■과에서 추천한 전문가 1명만 부서 추천을 통해서 신규 선정하였을 뿐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관이 자체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관은 위원 선정 시,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 현황 및 위원 위촉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 내부결재를 득하고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나, 선정된 신규 위원 32명에 대한 위원 선정 근거를 갖추지 않아 어떤 사람이 시장 추천 위원으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내부 파일로만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현황을 공개 모집, 시장추천, 군구추천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연임 부적정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관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 시 신청자가 관련 조례에 명시된 연임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임 기한이 초과된 위원 5명을 위촉하였다.

3. 예산교육과정 미수료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2조 위원회 구성 요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자는 예산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예산교육과정은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서 매년마다 실시하며, 센터에서는 위원자격 의무교육인 예산학교 기본과정 및 찾아가는 맞춤형 예산학교, 위원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 중 총 46명이 예산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관은

- [주의]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심의·조정하는 중요 기구임을 감안하여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투명하게 위원을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연임 조건에 적합한 자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 선정 시 자격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부적정하게 선정한 관련자를 훈계처분 합니다.

인천광역시 개선요구

제 목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사업 선정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관 계 부 서 ○○관

내 용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2조 및 제16조, 제17조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을 원칙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분과위원회의 의견 심의·조정·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례 제25조 및 제27조에는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활동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1] 주요기능(주민참여예산위원회 VS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	- 200명 이내	- 15명 이내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 심사 - 분과위원회의 의견 심의·조정·결정 - 의견수렴(현장방문·공청회·토론회 개최) - 예산편성·결산 의견 제출 - 총회결과 및 참여예산 평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의견 제시 -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활동 지원 등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재구성

그러나, ○○관은 [표2]와 같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협치형 운영계획’에서 주민투표 대상사업 선정 심의를 협의회에서 하도록 계획 하였으며, 협의회를 2020년 1회, 2021년 2회, 2022년 2회 각각 개최하여 협치형 사업 총 133건을 심사하고 적정사업으로 86개 사업, 25,949백만 원을 선정하였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에 대한 선정 심사는 위원회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협의회는 관련 조례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표2]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사업 선정 심의현황

▶ 심사대상 133건, 선정 86건(25,949백만원)

연도	협치형 운영 계획	계획서 내용 발췌내용	비고
2020년	2020년 시정협치형 사업 운영계획	○ 시정협치형 사업선정 심사(120% 조정) - (심사내용) 사업타당성, 필요성, 사업 효과, 협치 과정 등 심사 * 심사결과 전체사업 우선순위 기준, 사업규모 120% 이하 사업 탈락 - (심사기구)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 심사대상 30건 · 선정 19건 · 선정사업비 : 8,504백만원 · 협의회 개최(1회)
2021년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세부운영계획	○ 2022년 협치형 사업선정 - (심사기준) 사업타당성, 필요성, 사업 효과, 지속가능성, 제안사업기준 - (심사결과) 투표대상 적격여부 결정 - (심사기구)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 심사대상 53건 · 선정 44건 · 선정사업비 : 12,140백만원 · 협의회 개최(2회)
2022년	2022년 주민참여예산 협치형'운영 계획	○ 주민투표 대상사업 선정 심의 - (심사내용) 협치형(목표액 200억)의 130% 투표대상 선정 * 260억 원 이내 - (심사기구)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 심사대상 50건 · 선정 23건 · 선정사업비 : 5,305백만원 · 협의회 개최(2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관은

[개선]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관련 조례 등에 관한 의견제시와 운영 활동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선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자료공개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관 계 부 서 ○○관

내 용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5조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는 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군·구 위원회”라 한다)는 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사업이 있을 경우 각 군·구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을 경유한 후 6월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9조에 따르면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출석위원의 발언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역참여형’ 사업 미공개

인천광역시 ○○관(이하 “○○관”이라 한다.)은 ‘2021년 주민참여예산(2020년 발굴) 사업’ 선정을 위해 [표1]과 같이 주민이 참여하는 유형을 총 5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표 1]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참여유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사업내용	제안자
계	40,000		
참여형	일반참여형	광역도시 문제 해결 및 시민편익을 위한 사업	일반시민
	시정참여형	민관협치기구, 각종 온라인 매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시민 제안사업	일반시민 민관협치기구
	지역참여형	군·구 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군·구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협치형	시정협치형	지역별, 계층별, 시대적 요구사항 반영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발굴	협치단
	동협치형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	협치단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 중에서 ‘지역참여형’은 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 중 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군·구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관은 2020년 6월 3일 각 군·구에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참여형’ 사업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군·구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참여형’ 사업(27건 6,571백만원)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관은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군구에서 제출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회의록 공개 지연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모든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개최한 분과위원회 등 회의 개최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나, 2020년에는 14건, 2021년은 28건, 2022년은 31건 등 총 73건에 대하여 회의 개최 후 3일에서 최대 42일까지 공개를 지연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관은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 표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선정 현황 및 각종 회의결과 등 주민 참여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관 계 부 서 ○○관

내 용

1. 2020년 주민참여예산(' 19년 발굴사업)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관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유형별 운영계획」을 [표1]과 같이 수립하였다.

[표1]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유형

구 분 유형별		규모 (억원)	사 업 내 용	제안자
계		300		
참 여 형	일 반 참 여 형	180	· 광역도시 문제 해결 및 시민편익을 위한 사업	일반시민
	지 역 참 여 형	50	· 군,구 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해당군구 거주자
계 획 형	시 계 획 형	50	· 계층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치 계획형 사업	단체, 법인, 시민20인상
	동 계 획 형	20	· 읍·면·동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계획형 사업	동지역위원회 주민20명이상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일반참여형 사업은 시민으로부터 분야별로 제안사업을 접수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심사, 우선순위를 정해 총회에 보고하고 참여예산위원, 투표 결과 등을 합산하여 최종 결정하여 선정한다.

따라서 시민으로부터 제안 받은 사업에 대하여 심사, 결정하여야 하나 시민이 아닌 부서에서 제안한 사업을 [표2]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하였다.

[표2] 부서 제안 사업 선정 현황

(단위:천원)

연번	유형	담당부서	사업명	예산액	비고
계				714,000	
1	일반참여형	●●	AA	264,000	
2	일반참여형	●●	BB	250,000	
3	일반참여형	●●	CC	200,000	

2. 2021년 주민참여예산(' 20년 발굴사업)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관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유형별 운영계획」을 [표3]과 같이 수립하였다.

[표3]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유형

(단위:억원)

구분		규모 (억원)	사업내용	제안자
유형별				
계		400		
참여형	일반참여형	120	· 광역도시 문제 해결 및 시민편익을 위한 사업	일반시민
	시정참여형	100	· 민관협치기구, 각종 온라인 매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시민 제안사업 · 각종 위원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민관 숙의과정을 이행한 사업 중 참여예산 목적에 맞는 사업	일반시민 민관협치기구
	지역참여형	50	· 군·구 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군·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협치형	시정협치형	90	· 지역별, 계층별, 시대적 요구사항 반영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발굴 (*민관 협치를 통한 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제안)	협치단
	동협치형	40	·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 (*주민자치회 운영 등 주민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업) ▶ 주민자치회가 의제발굴, 순위선정 주도(30억) ▶ 주민자치회 비 전환동 및 희망동 대상 의제발굴 경험 축적(10억) (* 협치 시범 자치구 1~2곳 공모 예정)	협치단
지속사업		α (20이내)	· 추진 중인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 (*1회에 한하여 참여예산으로 반영)	사업부서

※ 제안사업 신청 건에 따라 유형별 사업비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일반참여형 사업

일반참여형 사업은 단년도 사업¹⁾으로 일반시민이 광역도시 문제 해결 및 시민편익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고 그 이후 절차에 따라 선정되는 사업이다.

일반참여형 사업의 선정 절차는 제안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안 취지 등 제안자 의견을 반드시 청취 후 관계법령, 조례, 사업 타당성, 유사사업 통폐합, 적격성 등 검토, 사업 구체화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해당 분과위원회에 제출하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사업 제안서, 사업부서 검토 의견 등을 참고하여 사업 적정성 여부를 1차(160%), 2차(120%)에 걸쳐 심사하여 총회에 상정하여 선정한다.

따라서 분과위원회에서는 사업제안서 및 사업부서 검토 의견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적정한 제안사업을 선정하여야 하나, [표4]와 같이 사업부서에서 군·구 이관대상이거나, 기추진중인 일반예산 사업이라고 제출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선정하였고, [표5]와 같이 기추진중인 일반예산사업 중 일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수립하였다.

[표4] 부서 의견 미반영 선정 사업(지속사업 제외)

○ 부서 의견 : 이관대상

(단위:천원)

담당부서	사업명	예산액	부서검토내역	비고
△△	DD	160,065	- 기추진중, 타기관(군구) · 제안사업들이 대부분 기 추진 중인 사업이거나, 군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관대상임	

1)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P.38

▶ 2020년 예산사업 : 일반참여형, 동계획형, 시계획형(모두 단년도 대상 사업임)

▶ 2021년 예산사업 : 일반참여형, 동협치형(단년도 사업)/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단년도 및 계속비 사업)

○ 부서 의견 : 기추진중인 일반예산사업

(단위:천원)

연번	2020 사업명 (일반예산)	예산액	2021 사업명 (참여예산)	예산액	부서의견	비고
1	A	258,000	AA	1,000,000	사업 진행 중	
2	B	995,000	BB	400,000	사업 진행 중	
	C	800,000				
3	D	492,526	DD	110,000	기존 사업과 유사	
4	E	130,800	EE	10,000	중복 되는 사업으로 예산지원 필요 없음	
5	F	205,200	FF	40,000	사업 진행 중	
6	G	38,800	GG	45,000	사업 진행 중	
7	H	300,000	HH	200,000	사업 진행 중	
8	I	1,319,000	II	200,000	사업 진행 중	
			JJ	220,000		

[표5] 기추진중인 일반예산사업 중 일부 주민참여예산 수립 현황

(단위:천원)

연번	2021 사업명 (일반예산)	2021 사업명 (참여예산)	총예산	일반예산	주민참여 예산	비고
1	ㄱ	ㄱㄱ	146,800	136,800	10,000	
2	ㄴ	ㄴㄴ	3,124,823	3,072,823	52,000	
3	ㄷ	ㄷㄷ	840,000	420,000	200,000	
		ㄷㄹ			220,000	
4	ㄹ	ㄹㄹ	15,040,000	14,840,000	200,000	

또한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 추진한 주민참여 예산사업 중 사업효과 등을 고려,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속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20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 지속 추진하려면 2021년 지속사업으로 하여야 하나, [표6]과 같이 기추진중인 주민 참여예산의 연도에 따른 사업 유형만 변경하여 선정하였고, [표7]과 같이 기추진 중인 주민참여예산 사업명만 변경하여 선정·수립하였다.

[표6] 기추진중인 주민참여예산 유형 변경 선정 현황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유형 (2020년 → 2021년)	예산	비고
1	스스	시 계획형 → 일반참여형	30,000	
2	ㅇㅇ	시 계획형 → 일반참여형	40,000	

[표7] 기추진중인 주민참여예산 사업명 변경 선정 현황

(단위:천원)

유형	2020 사업명	예산액	2021 사업명	예산액	부서의견	비고
일반 참여형	ㄷ	400,000	ㄷㄷ	52,000	-	

(2) 그 외 유형 사업

일반참여형 외 시정참여, 지역참여, 시정협치, 동협치형 사업 또한 일반시민 및 협치단 등의 제안으로 각 유형별 처리 절차에 따라 수립 선정한다.

따라서 처리절차에 맞게 선정하여야 하나, [표8]과 같이 기추진중인 일반예산 사업 중 일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수립하고, 지속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표9]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연도에 따른 사업 유형만 변경하여 선정하였다.

[표8] 기추진중인 일반예산사업 중 일부 주민참여예산 수립 현황

(단위:천원)

연 번	2021 사업명 (일반예산)	2021 사업명 (참여예산)	총예산	일반예산	주민참여 예산	비 고
1	ㄸ	ㄸㄸ	1,000,000	800,000	200,000	
2	ㄹ	ㄹㄹ	4,797,466	3,213,466	1,584,000	
3	ㅀ	ㅀㅀ	2,000,000	1,900,000	100,000	

[표9] 기추진중인 주민참여예산 유형 변경 선정 현황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유형 (2020년 → 2021년)	예산액	비고
1	ㅁ	시 계획형 → 시정협치형	458,600	
2	ㅂ	지역참여형 → 지역참여형, 동협치형	110,000	

3. 2022년 주민참여예산(' 21년 발굴사업)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참여형)

○○관에서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유형별 운영계획」을 [표10]과 같이 수립하였다.

[표10]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유형

(단위:억원)

유 형 별	규 모	사 업 내 용	제 안 자
계	500		
참 여 형	200	◦ 도시 문제 해결과 시민편익을 위한 일반시민 제안 공모사업 * 2개이상 군구 해당사업	일반시민, 군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협 치 형	250	◦ 사업과정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 * 각종 경로의 시민제안에 대해 민관속의 완료 사업 ** 사업제안 과정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여 특정의제사업 발굴 (민관협치기구 또는 협치단 구성 참여)	시민참여기구, 협치단
주민자치회형	50	◦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 지원 * 주민자치회 운영 등 주민 속의·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업	주민자치회 및 일반시민

※ 제안사업 신청 건에 따라 유형별 사업비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참여형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으로부터 제안사업을 접수받고 사업부서에서 검토 및 보완하여, 사업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심사,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실링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총회 보고하고, 총회는 분과위원회가 보고한 사업에 대해 시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제안사업을 최종 결정한다.

제안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는 제안 취지 등 제안자 의견을 반드시 청취 후 관계법령, 조례, 사업 타당성, 유사사업 통폐합, 적격성 등 검토, 사업 구체화 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해당 분과위원회에 제출하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사업 제안서, 사업부서 검토 의견 등을 참고하여 사업 적정성 여부를 1차(160%), 2차(120%)에 걸쳐 심사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이에 분과위원회에서는 사업제안서 및 사업부서 검토 의견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적정한 제안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르면 「2020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과 달리 제안내용이 기추진중인 사업의 경우 사업을 개선 또는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참여예산사업으로 분류·검토하도록 하여 다수의 기추진 중인 사업이 반영되었다.

계획에 따라 다수의 기추진중인 사업의 개선 또는 확대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 [표11]과 같이 참여예산 부적정 및 선행절차 등의 이유로 부적정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분과위원회에서는 사업부서 검토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선정하였다.

[표11] 부서 의견 미반영 선정 사업(지속사업, 기추진 개선, 확대사업 제외)

(단위:천원)

연번	담당 부서	사업명	예산액	부서검토의견	비고
1	☒☒	aa	52,000	참여예산 부적정	
2	⊙⊙	bb	47,000	참여예산 부적정	
3	◆◆	cc	90,000	참여예산 부적정	
4	≡≡	dd	340,000	참여예산 부적정	
5	ⅡⅡ	ee	201,440	참여예산 부적정	

또한 [표12]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기추진중인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동일 사업을 추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수립하였다.

[표12] 동일 사업 선정 수립 현황

(단위:천원)

연번	2020~2021 사업명	예산액	2022 사업명	예산	부서의견
1	ff	연도별 200,000	ff-f	298,994	지속사업으로 반영예정
			ff-ff	200,000	
2	gg	연도별 200,000	gg-g	60,000	gg 사업으로 해당 내용을 지원하고 있음
			gg-gg	200,000	
3	hh	연도별 30,000	hh-h	30,000	연례 반복 사업으로 진행중임
			hh-hh	30,000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관은

[주의] 주민참여예산 취지 및 선정 기준에 맞게 주민 제안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검토, 적극 반영하여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관 계 부 서 ○○관

내 용

○○관은 2020년,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 심사 일반기준을 [표1]과 같이 수립하였다.

[표1] 심사 일반 기준 *필요부분 발췌

2021년 주민참여예산('20년 발굴사업)	2022년 주민참여예산('21년 발굴사업)
<p><일반참여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성 경비 사업 지양(분과별 실링의 5%이내) - 부적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단체 등의 운영비, 인건비, 기능보강 요구사업 <p><시정참여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구 소관 사무 및 타기관에 해당하는 사업 (군구 참여예산 및 해당기관으로 이관) · 기관, 단체 등의 운영비, 인건비, 기능보강 요구사업 	<p><참여형, 특정의제 발굴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성 경비 사업 지양(분과별 실링의 5%이내) - 부적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구 소관 사무 및 타기관에 해당하는 사업 (군구 참여예산 및 해당기관으로 이관) · 기관, 단체 등의 운영비, 인건비, 기능보강 요구사업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행사성 경비 사업 지양(분과별 실링의 5% 이내) 미준수

(일반)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이 제안한 사업 내용에 대해 인천시 사업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토, 사업 구체화 등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며, 시정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반시민이 제안한 사업 및 민관 속의 절차 이행 사업 등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제안 사업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사 일반 기준에 맞게 선정하여야 하나, [표2]와 같이 행사성 경비 사업 지양 기준(분과별 실링의 5% 이내)에 맞지 않게 심사·선정하였다.

[표2] 주민참여예산 기준 미준수 선정 현황

○ 2021년 주민참여예산

(단위:천원/%)

유형	주민참여 예산반영액	행사성경비 예산반영액	비율	비고
일반참여형	564,000	528,000	93.6	

<행사성경비 사업 상세내역>

(단위:천원)

연번	유형	담당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계					528,000	
1	일반참여형	○○	AA	행사운영비	30,000	
2	일반참여형	●●	BB	민간행사사업보조	108,000	
3	일반참여형	●●	CC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	
4	일반참여형	●●	DD	민간행사사업보조	160,000	
5	일반참여형	●●	EE	민간행사사업보조	80,000	
6	일반참여형	●●	FF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0	

○ 2022년 주민참여예산

(단위:천원/%)

유형	주민참여 예산반영액	행사성경비 예산반영액	비율	비고
참여형	719,000	130,000	18.0	

<행사성경비 사업 상세내역>

(단위:천원)

연번	유형	담당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계					130,000	
1	참여형	●●	GG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0	
2	참여형	●●	HH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	

2. 부적정 사업(운영비, 인건비, 기능보장 요구 사업) 선정

주민참여예산 일반 심사기준에 기관, 단체 등의 운영비, 인건비, 기능보장 요구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부적정 사업이라고 명시하였으나, [표3]과 같이 운영비, 인건비성 사업 예산을 심사·선정하였다.

[표3] 부적정 사업 선정 현황

○ 2021년 주민참여예산

(단위:천원)

연번	유형	담당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지원내용	예산액	비고
계						1,588,400	
1	일반참여형	♠♠	II	자치단체 경상보조	운영비	792,000	
2	일반참여형	♠♠	JJ	자치단체 경상보조	운영비	200,000	
3	시정참여형	♠♠	KK	자치단체 경상보조	인건비	596,400	

○ 2022년 주민참여예산

(단위:천원)

연번	유형	담당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지원내용	예산액	비고
계						2,866,000	
1	참여형	♠♠	II	자치단체 경상보조	운영비	1,550,000	
2	참여형	♠♠	JJ	자치단체 경상보조	운영비	200,000	
3	특정의제발굴형	♠♠	KK	자치단체 경상보조	인건비	1,116,000	

3. 자치사무 사업 선정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군·구 자치사무는 관할 자치단체 비용부담이 원칙이나, [표4]와 같이 자치사무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하여 시비를 지원하였다.

[표4] 자치사무 사업 선정 현황

○ 2021년 주민참여예산

(단위:천원)

연번	유형	담당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계					1,242,000	
1	일반참여형	♠♠	II	자치단체 경상보조	792,000	
2	시정참여형	♠♠	JJ	자치단체 경상보조	596,400	
3	시정참여형	♠♠	LL	자치단체 경상보조	150,000	

○ 2022년 주민참여예산

(단위:천원)

연번	유형	담당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계					2,976,000	
1	일반참여형	♠♠	II	자치단체 경상보조	1,550,000	
2	특정의제발굴형	♠♠	JJ	자치단체 경상보조	1,116,000	
3	특정의제발굴형	♠♠	LL	자치단체 경상보조	310,000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관은

[주의] ①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 따라 군구 소관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부적정 사업을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심사 일반 기준에 맞게 사업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군·구 자치사무 필요경비에 대해 시비가 지원되지 않도록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참여예산 지속사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관 계 부 서 ○○관

내 용

1. 2021년 주민참여예산(' 20년 발굴사업) 지속사업에 관한 사항

○○관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유형별 운영계획」을 [표1]과 같이 수립하였다.

[표1]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유형

(단위:억원)

구 분		규모 (억원)	사 업 내 용	제안자
유형별				
계		400		
참 여 형	일 반 참여형	120	· 광역도시 문제 해결 및 시민편익을 위한 사업	일반시민
	시 정 참여형	100	· 민관협치기구, 각종 온라인 매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시민 제안사업 · 각종 위원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민관 숙의과정을 이행한 사업 중 참여예산 목적에 맞는 사업	일반시민 민관협치기구
	지 역 참여형	50	· 군·구 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군구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협 치 형	시 정 협치형	90	· 지역별, 계층별, 시대적 요구사항 반영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발굴 (*민관 협치를 통한 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제안)	협치단
	동 협치형	40	·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 (*주민자치회 운영 등 주민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업) ▶ 주민자치회가 의제발굴, 순위선정 주도(30억) ▶ 주민자치회 비 전환동 및 희망동 대상 의제발굴 경험 축적(10억) (* 협치 시범 자치구 1~2곳 공모 예정)	협치단
지속사업		α (20이내)	· 추진 중인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 (*1회에 한하여 참여예산으로 반영)	사업부서

※ 제안사업 신청 건에 따라 유형별 사업비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021년 주민참여예산은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와 달리 지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속사업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사업효과 등을 고려,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1회에 한하여 참여형, 협치형 예산 외 +a(20억 이내)의 규모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지속사업 선정 기준에 맞게 선정하여야 하나, [표2]와 같이 기준(20억 이내)에 맞지 않게 예산 규모를 초과 선정·수립하였다.

[표2] 지속사업 기준(20억 이내) 미준수 선정 현황

(단위:천원)

유형	주민참여 예산액	지속사업 예산액	비고
계	21,356,467	5,759,800	
일반참여형	12,912,165	5,609,800	
시정참여형	8,444,302	150,000	

2. 2022년 주민참여예산(' 21년 발굴사업) 지속사업에 관한 사항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은 단년도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속사업으로 추진 시에는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사업효과 등을 검토·심사 후 우수 사업에 한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참여형은 신규사업과 지속사업 선정비율은 분야별 분과 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하며 지속사업은 가급적 20% 이내로 하되 접수규모를 고려하여 분과별 결정하여야 하며,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도 전년도 분야별(8개)로 사업규모의 20% 이내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은 기준에 따라 분과별 사업규모의 20% 이내로 신청·선정 하여야 하나, [표3]과 같이 2022년 주민참여예산 지속사업 선정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표3] 지속사업 선정 비율(분과별 20% 이내) 미준수 선정 현황

(단위:천원/%)

유형	분야	주민참여 예산반영액	지속사업 예산액	비율	비고
일반참여형	☐☐	1,020,994	450,000	44.0	
	▨▨	2,042,000	1,054,000	51.6	
	■	2,689,000	2,325,000	86.4	
	▩▩	1,108,400	509,000	45.9	
	▽▽	2,591,000	1,000,000	38.5	
특정의제 발굴형	≡≡	2,517,457	2,517,457	100	
	◎◎	844,747	475,747	56.3	
	●●	364,140	157,260	43.1	
	◇◇	498,000	360,000	72.2	
	◆◆	225,000	225,000	100	
	■	2,497,000	1,426,000	57.3	

또한 [표4]와 같이 사업부서에서는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속사업을 선정하여 ○○관에게 제출하였으며, ○○관은 지속사업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운영계획과는 다르게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에서 지속사업을 심의·선정하도록 하였다.

[표4] 분과위원회 미심사 지속사업 선정 현황

(단위:천원)

연번	유형	분야	담당부서	사업명	예산액	비고
계					5,161,464	
1	시정참여형	■	aa	ㄱㄱ	310,000	
2	시정참여형	■	aa	ㄴㄴ	1,116,000	
3	시정참여형	√√	bb	ㄷㄷ	1,950,000	
4	시정협치형	▩▩	cc	ㄹㄹ	50,000	

5	시정협치형	☒☒	cc	□□	47,260	
6	시정협치형	☒☒	cc	ㅂㅂ	40,000	
7	시정협치형	☒☒	cc	ㅅㅅ	20,000	
8	시정협치형	◆◆	dd	○○	225,000	
9	시정협치형	◇◇	ee	ㅈㅈ	200,000	
10	시정협치형	◇◇	ee	ㅊㅊ	50,000	
11	시정협치형	◇◇	ee	ㅋㅋ	110,000	
12	시정협치형	≡≡	ff	ㅌㅌ	320,457	
13	시정협치형	≡≡	ff	ㅍㅍ	247,000	중장기
14	시정협치형	▨▨	gg	ㅎㅎ	475,747	중장기

3. 2020년 ~ 2022년 추진 지속사업에 관한 사항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의하면 지속사업은 1회에 한하여 지속 사업으로 선정 후 향후 필요시 일반사업으로 편입한다. 따라서 2021년에 주민참여 예산 지속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2022년도 예산 수립 필요시 일반사업으로 편입 하여야 하나, [표5]와 같이 2020년부터 3년에 걸쳐 지속사업을 추진하도록 선정 하였다.

[표5] 2020~2022년 주민참여예산 지속사업 추진 현황

(단위:천원)

연번	유형	분야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비고
계					4,744,000	
1	참여형	☒☒	ll	A	200,000	
2	참여형	☒☒	mm	B	1,000,000	
3	참여형	☒☒	nn	C	150,000	
4	참여형	▨▨	oo	D	100,000	

5	참여형	■	hh	E	475,000	
6	참여형	■	hh	F	200,000	
7	참여형	■	hh	G	1,550,000	
8	참여형	▨▨	ii	H	100,000	
9	참여형	▨▨	ii	I	100,000	
10	참여형	▨▨	jj	J	300,000	
11	참여형	▨▨	jj	K	110,000	
12	참여형	▨▨	kk	L	364,000	
13	참여형	▩▩	ll	M	95,000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관은

[주의] 일반예산사업으로 편입·수립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 지속사업으로 수립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 지속사업 계획에 따라 절차와 기준에 맞게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훈계) · 시정 요구 · 통보

제 목 주민참여예산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표1]과 같이 2021년 주민참여예산(' 20년 발굴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1] ◇◇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원/%)

연번	사업명	보조사업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1	ㄱ	aa	108,000,000	108,000,000	100	
2	ㄴ	bb	160,000,000	160,000,000	100	
3	ㄷ	cc	80,000,000	80,000,000	100	
4	ㄹ	dd	20,000,000	20,000,000	100	
5	ㅁ	ee	100,000,000	100,000,000	1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48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한 후,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적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표2]” 행사를 추진한 보조사업자가 지출 증빙으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제3자 전자세금 계산서 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표2]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과에서는 조회를 하지 않고 정산결과를 확정하였다.

[표2] 부적정한 세금계산서

(단위 : 원)

사업명	발행일	지출내역	공급자	공급받는자	금액	비고
■■■	2021.10.21	시스템 잔금	ff	gg	5,000,000	발급내역없음

또한 ◇◇과 ★★대회 등 2개 사업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지출 증빙 자료가 미비하였으나, 이에 대한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산 처리를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과장은

[주의] ① 실적보고서 검토 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를 훈계처분 합니다.

[시정] 부적정 집행 5,000,000원을 보조사업자로부터 신속히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부적정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을 통해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6조(업무상 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3 등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있는 보조사업자 및 이를 공모한 계약 상대방에 대해 수사의뢰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요구·통보·권고

제 목 ☆☆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관 계 부 서 ○○관

내 용

인천광역시에서는 2013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운영 초기에는 사업 공모를 통해 제안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민간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 형태로 운영해 왔다. 일반 시민들이 제안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시 예산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런 이유로 시 정부 중심의 공모사업만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렇게 운영되던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시켜 참여를 유도하여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대폭 확대됨으로 인해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2018년에 ☆☆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주민참여 활성화 민관합동 TF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에서는 2018년 11월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안) 시의회 동의 후 2018년 12월 ☆☆ 민간위탁 공모를 진행하였다.

1차 공고 시 ☆☆ 1개 단체만 신청하여 재공고를 진행하였고 재공고 시에도

동일한 단체 1개만 신청하여, 신청한 1개 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 해당 단체가 적격자로 선정되었다.

○○관에서는 적격자로 선정된 ☆☆와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관에서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1월 「☆☆ 운영」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때에도 2018년도와 동일하게 ☆☆ 1개 단체만 신청하여 재공고 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단체가 적격자로 2회 연속 선정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을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1. 2020년 '▽▽' 공모사업('19년 발굴사업) 추진 부적정

가. ☆☆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시 위탁사무 관련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운영 조례”라 한다.)에 따라 ☆☆은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일반 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운영, ②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지원, ③ 주민자치제도와의 연계관련 사항,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사업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에서는 사업공모를 통해 참여단체를 선정하고 ☆☆에서 선정한 참여단체가 추진단을 구성하여 그 추진단을 통해 의제가 발굴되고 숙의·조정을 진행하여 사업이 구체화되고, 분과위원회를 통해 사업이 심사·선정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에서 선정한 참여단체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발굴·선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단체를 ☆☆에서 직접 선정한 사실은 조례에서 정한 ☆☆의 기능을 넘어서는 권한이 ☆☆에 부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 공모사업 참여단체 선정 관련

주민예산참여사업 중 ▽▽사업은 민관 협치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제안한 후 시민이 최종 선정하여 2020년에 추진하는 민관협치사업이다.

사업공모 참여자의 결정은 20인 이상 공동신청자,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센터에 방문하여 공모신청을 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센터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하여 다득점 순으로 이루어진다.

▽▽ 공모(2019년 실시)에는 총 8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1차 심사를 모두 통과하였으나 1건의 신청자가 면접심사를 포기함으로써 인해 총 7건에 대한 2차 면접이 실시되었고, 면접심사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에서 총 6명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에서는 20**년 *월 **일 ‘20**년 ▲▲ 공모 심사위원 추천 요청’ 문서를 ○○관으로 보내면서 심사위원회 구성(안)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 공모 심사서류를 확인한 결과, 당초 심사위원회 구성(안)과는 다르게 심사위원이 최종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는 그 사실이 보고되지 않은 채 2차 면접심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2차 면접심사 종료 후 ☆☆에서는 20**년 *월 *일 ‘20**년 ▲▲ 시범사업 심사 결과 알림’ 문서를 ○○관으로 보내면서 심사위원 명단, 심사위원별 채점표 등 심사 관련 세부자료는 첨부하지 않고 신청자(단체)와 총점, 적정여부에 대한 결과가 기록된 심사결과만 첨부하였다.

2. 20**년 시 지도·감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부적정

○○관에서는 20**년 **월 **일부터 2일간 ☆☆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징계처분 요구 1건, 시정 1건, 주의 3건, 개선요구 5건 등 총 10건의 지적사항을 ☆☆에 전달하여 조치 결과를 20**년 **월 **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중 징계처분 요구 건은 ‘▽▽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기록물 관리 소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에서는 공모를 통해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참여자(단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항목별 채점표를 심사결과 보고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심사총괄표만 보관하고 심사위원별 개별 채점표는 폐기하여 해당 업무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건이다.

20**년 지도·점검 당시 ☆☆에서는, 동 ▽▽사업 공모심사는 20**년 *월 **일부터 2일간, 시 ▽▽사업 공모심사는 20**년 *월 *일에 각각 진행되었으며 시 ▽▽사업 공모심사 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는 심사위원별로 총점이 기재된 총괄표에 종합하고 심사결과는 심사위원회의 집합적인 결정이므로 심사위원장이

대표 사인을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본 결정사항에 대해 심사위원회 간사는 개별심사위원 채점표는 관리하지 않고 심사위원장이 서명한 심사총괄표만 관리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시·동 ▽▽사업 심사위원의 개별채점표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는 심사결과의 공개 문서와 심사관련 자료 관리를 혼동하여 발생한 실수로 심사위원회 간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20**년 *월 *8일 센터 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관련자를 '경고' 처분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에서 시에 제출한 조치 결과를 보면, 붙임문서에 '①지적사항 등 조치결과', '②3차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및 회의록'이 있으나 '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직원에게 경고 조치를 의결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2개의 파일 어디에도 해당 직원 즉, 징계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해 당시 ○○관에서는 어떤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3. 기간제 직원 채용 부적정

☆☆에서는 20**년 *월 **일 공개모집을 통하여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여 *월 *일자로 출근하였으나 *월 *일 바로 퇴사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기간제 직원을 특별 채용하고자 사전에 유선으로 협의 후 20**년 *월 **일 ○○관으로 특별채용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내고 ○○관에서는 20**년 *월 **일 특별채용에 대해 승인을 통보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특별채용 대상자는 서류·면접심사 없이 면담만으로 근무기간 10개월의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이후 ☆☆에서는 20**년 *월 **일에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제 직원이 업무에 대한 직무 능력이 인정되고 동료 직

원들의 평가도 우수하며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해 특별채용이 필요하다며 20**년 **월 **일 다시 ○○관에 특별채용 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관에서는 이를 다시 승인하여 동 직원이 두 번 연속 공개모집을 통한 서류, 면접심사 없이 20**년 **월 **일까지 재채용되었다.

또한 ☆☆에서는 20**년 **월에 정직원 1명과 3개 분야별로 기간제 직원 각 1명 등 총 4명을 채용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실시하였고 기간제 2개 분야에 1명씩만 응시하여 20**년 **월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나 1차 공고 시와 동일하게 기간제 2명만 응시하였다.

2개 분야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 면접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가 면접을 불참하여 서류, 면접심사를 통과하여 채용되었다.

그 후 ☆☆에서는 채용되지 않은 2개 분야에 대해 인천시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업 시기가 임박하였으나 담당자가 부재하여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특별채용을 실시하여 기간제 직원 ◇◇◇, ◆◆◆을 **월 **일자로 채용하였다.

4. 직원 채용 시 승인절차 미이행

협약서에 따라 수탁기관은 인력의 사항(변경 포함) 및 기구 구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서는 직원 채용 등 인력 변경사항에 대해 인천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7건의 직원 공개채용이 있었으나 6건은 인천시의 승인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2건에 대해서는 채용결과도 보고하지 않았다.

5. 위·수탁 협약 이행 소홀

협약서에 따라 수탁기관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 운영 규정을 인천시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고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에서는 20**년 **월 **일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운영 규정을 2019년 2월 28일 시에 승인 요청하였고 같은 해 **월 **일 승인되었다.

협약서 제4조(사업계획) 제5항 및 제9조(사업비 정산)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0일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하나, ☆☆에서는 20**년 실적보고서 및 정산결과 등 관련 자료를 20**년 **월 **일에 지연 제출하였다.

20**년 협약서 제10조(보험가입)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협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또한 20**년 협약서 제12조(보험가입)에 따르면 협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천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서는 20**년에는 보험증권을 시에 제출하지 않았고, 20**년에는 20**년 **월 **일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월 **일에 지연 제출하였다.

6. 분기별 실적보고서 등 제출 소홀

협약서 및 운영규정에 따라 ☆☆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실적 현황을 해당분기의 종료 다음 월의 15일까지 연 4회 시에 제출하여야 하나, ☆☆에서는 20**년, 20**년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인천시에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관에서는 20**년 **월 센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분기별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관련 지적사항을 ☆☆에 통보한 바 있다.

또한 20**년 협약서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분기별 다음 달 15일까지 전 분기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실적, 당기 세부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에서는 20**년 위·수탁 협약 이후 당기 세부사업계획을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

7. ☆☆ 지도·점검 소홀

20**년 협약서 제11조(감독)에는, “인천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20**년 협약서 제13조(지도·점검)에는,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수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한다.”라고 수정되었다.

또한 20**년 ☆☆ 운영규정 제63조(점검시기 및 점검사항)에는, “시는 연1회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시와 수탁법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및 특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20**년 ☆☆ 운영규정 제65조(점검시기 및 점검사항)에는, “시는 연2회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 경우 정기 채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1월, 8월로 한다.)”라고 개정되었다.

그러나 ○○관에서는 20**년, 20**년에는 협약서 및 ☆☆ 운영규정에 따라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년 협약서 및 ☆☆ 운영규정이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개정되었음에도 20**년 **월 단 1회 실시하였고

20**년에는 감사일 현재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관은

[시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의 권한을 부여하고 부여된 권한 내에서 ☆☆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고, 위·수탁 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의 운영 사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에 향후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의 설치 및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2022년 ■■ 사업 선정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관 계 부 서 ○○관

내 용

인천광역시 ○○관(이하 ‘○○관’이라 한다.)에서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공모를 통해 10개 분야 이내로 의제를 선정하고, 협치단을 구성하여 의제별 사업을 발굴한 후 최종 투표를 거쳐 사업을 확정, 예산을 편성하고 2022년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로 진행이 된다.

1. 의제 선정 과정 부적정

■■사업 의제 공모를 위해 ○○관에서는 2021년 2월 9일 ‘주민참여예산 ■■의제 공고’ 문서를 전 부서에 시행했으며 의제가 있는 부서에서 관련사항을 ○○관에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문을 통한 업무처리가 필요함에도, ○○관에서 보낸 문서를 확인한 결과 ■■의제 제출방식이 ‘공문 또는 온메일 접수’로 표기되어 있고, 총 11건의 의제 중 문서로 제출되지 않은 2개 부서의 제안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아울러 ●●과에서 문서로 제출한 제안서에는 의제명이 ‘AA운영’, ‘BB사업’ 등 2건으로 되어 있으나 최종 선정된 의제명은 ‘CC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해 제출된 제안서나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2. 최종 사업선정 과정 부적정

○○관에서는 의제별 발굴된 총 55개 사업 중에서 목표예산 10,000백만원의 120%인 총 사업비 12,0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총 44개 사업을 1차 선정하였으며 이후 사업 중복 사유로 1개 사업이 제외되고 총 사업비 11,140백만원, 43개 사업이 우선순위 투표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우선순위 투표는 시민 12,16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33일간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투표 결과를 토대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거쳐 42개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다.

확정된 사업을 보면 우선순위 투표대상 사업 43개 중 ‘DD 사업’ 등 3개 사업이 주민투표 결과 제외된 것으로 보이나 이 주민투표 결과가 문서화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2020년 ■■으로 선정된 계속비 3개 사업 중 ‘EE 사업’, ‘FF사업’ 등 2개 사업이 추가 선정되었고 1개 사업 ‘GG사업’은 제외되었으나 이에 대한 사유를 문서화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관은

[주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제 공모·선정, 사업 선정 등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공개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관 계 부 서 ○○관

내 용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 등 환류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등 평가·환류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런 평가 및 환류방식에는 ①사업 모니터링, ②군구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③참여예산제 개선에의 환류, ④유공자 표창 및 인센티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 모니터링은 주민참여예산 각 사업에 대해 분기별로 모니터링단 등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상황, 애로사항, 민원사항, 예산낭비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방식은 사업별 추진상황 관리카드를 검토하여 분과위원회별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서면심사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분과위원회별로 선정하여 실시하는 현장 심사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별로 각 분기당 사업별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보고서를 ○○관에게 제출하고 ○○관에서는 모니터링 결과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분기별로 사업별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심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에게 보고하고 ○○관에서는 그 결과를 매 분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9년 문서를 확인한 결과,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에 대한 분기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2020년 1월 31일에 ‘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결과 게시’를 게시하였으나 분과별 추진실적 및 사업별 추진성과에 대한 사항만 있을 뿐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2020년에는 매 분기 실시한다는 계획과는 다르게 ●● 사업은 2020년 10월 8일에 권역별로 모니터링을 1회 실시하였고, ■■■ 및 □□□□사업에 대해서는 ☆☆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020년 11월 2일, 27일 그 결과를 ○○관에게 보고하였다. ○○관에서는 ■■■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별로 접수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의견을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2021년 1월 8일 한 차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 □□□□ 사업에 대해서는 게시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관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우수사업 선정 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등 나머지 유형의 사업은 예산감시단이 자율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에서는 11월 12일 ‘2021주민참여예산 ■■■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보고 제출 요청’ 문서를 분과위원회 별 관계부서에 보내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았지만 해당 자료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았다. 아울러 예산감시단에서 실시하는 자율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는 문서 상 확인할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2021년 추진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감사일 현재까지 한 차례도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다.

2022년에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 ‘참여형’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2개 분과 총 79건에 대한 참여형사업에 대해 상·하반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상반기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고 시 홈페이지에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관은

[주의]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게 계획을 수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부서에 전달·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2021년 □□ 및 ◆◆프로그램 운영 정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2020년도 △△형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인천광역시 ○○과에서 2021년에 추진한 사업으로, ○○과에서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에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1. 집행증빙서류 미흡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지출 거래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률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

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한 후,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과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지출증빙자료에 지출결의서의 결재자 서명이 빠져있는 등 지출증빙자료가 미비함에도 추가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 없이 정산 결과를 확정하였다.

2. 원천징수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²⁾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아르바이트 인건비, 시상금, 수당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며, ○○과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 없이 정산결과를 확정하였다.

2) * 연도별 기타소득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 세율

구 분	2018.3.31.까지	2018.4.1.~2018.12.31.	2019.1.1.부터
필요경비율	80%	70%	60%
원천징수비율(지방소득세포함)	4.4%	6.6%	8.8%
과세최저한	250,000원 이하	166,666원 이하	125,000원 이하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과장은

[시정] 미징수된 소득세 1,123,04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검토 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시고, 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처리 기준 등 관련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